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규권 의원 발의]

의안번호	2487
------	------

발의일자 : 2024. 2. 2.

발 의 자 : 장규권 의원

찬 성 자 : 이인식 의원

1. 제안이유

취약계층 노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급식기관의 의무사항과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 및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 실시를 법제화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고양하고 건강한 노년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급식수행기관의 명칭을 명확히 함(안 제6조, 제8조).
- 나. 급식기관의 의무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신설).
- 다. 급식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조치 의무화를 규정함(안 제8조제1항).
- 라. 급식기관에 대한 위생·안전 교육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제2항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제4조, 제4조의2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3조, 제22조, 제32조,

제41조, 제71조, 제88조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조치

다. 기 타

1) 현행 조례 : 별도 첨부

2) 신·구조문 대비표 : 별도 첨부

3) 입법예고 : 2024. 2. 5. ~ 2. 13.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구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운영자 모집)”을 “(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운영자를”을 “급식기관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운영자는”을 “급식기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자”를 “급식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자는”을 “급식기관은”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

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영자”를 “급식기관”으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종전의 제7조)의 제목 “(지도점검)”을 “(지도점검 및 교육)”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2. (생략)</p> <p>3. “급식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u>구청장</u>’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p> <p>4. (생략)</p> <p>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u>운영자</u>를 지정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u>운영자</u>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법인이 급식 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p> <p>1. ~ 4.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 2. (현행과 같음)</p> <p>3. ----- ----- “<u>구청장</u>”----- ----- ----- ----- ----- -----.</p> <p>4. (현행과 같음)</p> <p>제6조(급식기관 지정 및 지원) ① ----- ----- <u>급식기관</u> ----- -----.</p> <p>② ----- <u>급식기관</u> -----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
----- 급식기관 -----

-----.

④ 급식기관은 -----

-----.

제7조(급식기관의 의무)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급식기관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하게 노인급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급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노인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급식장소 내에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수준의 조리시설 및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급식기관은 급식장소의 안전 점검, 철저한 위생관리, 균형 있는 식단 구성 등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급식기관은 노인의 건강 및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 (생 략)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소명감을 갖고 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점검 및 교육) ① -----

----- 급
식기관-----

-----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급식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생·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현행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12.] [서울특별시금천구조례 제1406호, 2023. 10. 12., 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노인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2. “급식”이란 일정기준의 요건을 갖춘 노인 등에게 제3조에 따라 중식 또는 그 외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급식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로식당,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종교단체, 그 밖에 비영리 법인·단체 중 노인급식 위탁사업자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급식장소”란 노인 등 지원 대상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구청장은 노인급식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매년 노인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

2. 그 밖에 결식 우려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노인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에게는 실비 수준의 급식비를 받고 급식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무료급식을 제공받고 있는 노인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급식 지원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급식장소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

2. 도시락 지원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지원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운영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자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 단체·법인이 급식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면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2.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급식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인정하는 종교단체 등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운영자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운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익금을 식재료 등 급식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경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노인급식에 대한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하고 이 조례에 따른 노인급식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노인급식 활동을 장려하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406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안전사고 예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낙상사고 등 노인에게 치명적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사고 예방 시책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안전관리계획 및 시·군·구안전관리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11.]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 2023. 12. 26.] [법률 제19843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6조(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 2024. 1. 2.] [법률 제19917호, 2024. 1. 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기숙사

나.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다. 병원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마. 산업체

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사. 그 밖의 후생기관 등

제3조(식품 등의 취급) ①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한다)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1. 6. 7., 2013. 3. 23.>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제32조(식품위생감시원) 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그 밖에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 등을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식품위생감시원을 둔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② 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임명·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식품위생교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유흥종사자를 둘 수 있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종업원은 매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제71조(시정명령)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영업하는 자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제88조(집단급식소) ①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6. 2. 3., 2018. 12. 11.>

②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집단급식소 시설의 유지·관리 등 급식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2021. 8. 17.>

1.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
2. 조리·제공한 식품의 매회 1인분 분량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44시간 이상 보관할 것
3.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영양사를 두고 있는 경우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요청하

는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를 것

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라 검사를 받지 아니한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채취한 야생생물을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7.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재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하지 말 것
 8.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할 것.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나머지 업소에 대한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9.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사용·조리하지 말 것
 10. 식중독 발생 시 보관 또는 사용 중인 식품은 역학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폐기하거나 소독 등으로 현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고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행위를 방해하지 말 것
 11. 그 밖에 식품등의 위생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킬 것
- ③ 집단급식소에 관하여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9조의3, 제22조, 제37조제7항·제9항,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8조, 제71조, 제72조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 ⑦ 집단급식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18. 12. 11.>